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8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 강유정·강선우·서영교

위성곤 • 김성환 • 문대림

한준호 • 이기헌 • 김한규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 · 질병 · 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2019년 세계보건총회(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국제질병분류(ICD-11)도 향후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세계보건총회는 각 회원국이 세계보건총회의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으로,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아울러 향후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 및 매출액 감소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됨.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9년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협의안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 기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 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1항). 법률 제 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기준으로"를 "참고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미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분류 작성·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표준분류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u>기준으로</u> 산업,	<u>참고하여</u>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여야 한다.	라 미리 관련 전문가 또는 이
	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
	<u> </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